

#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|     |  |
|-----|--|
| 의 안 |  |
| 번 호 |  |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과 민간 단체, 관계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하고, 위원회 기능·회의소집·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협력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
(안 제5조 ~ 제11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협력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
2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
3.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의 모니터링·제보
4. 재난 발생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,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
5.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
6.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부의하는 재난 안전 관련 사항 등

제3조(구성)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

2.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

3.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

4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, 단체·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

5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6.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제4조(운영)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평상시 :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

2. 재난 발생시 :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,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

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
2.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
3.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)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)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의사결정사항의 이행) 구미시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

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생략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지역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(안 제9조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### 3. 미첨부 사유

-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세출 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- 산출내역 (단위 : 천원)

| 내 용             | 산출내역            | 금액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4,000 |
|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| 100,000원×20명×2회 | 4,000 |

※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: 70,000원(기본) + 30,000원(2시간이상 초과)

### 4. 작성자

- 안전재난과 안전기획계 이 진 석 (054-480-6732)

| 소관 실 · 과    |       | 안전재난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류 형 욱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  | 조 형 호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이 진 석<br>(480-6732) |